전동스쿠터, 전동자전거 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

RRA KSDB 제4-1호 (2019.12.23.)

	개 요
0	최근 전동스쿠터, 전동자전거 등 이동수단용 전동기기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공유
	근 거
	「전파법」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O	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[별표 1]
	내 용
0	전동스쿠터와 전동자전거는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[별표 1] 제11호 다목 52)에 따라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로 분류되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임
-	다만, 해당 기자재가 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인증을 받은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[별표 1] 제11호 더목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됨
-	또한, 해당기자재의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[별표 1] 비고 제1호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됨